

제305회 시의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개정 보고

2022. 2.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 정관 개정 보고사항

## □ 보고 근거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제42조(정관의 변경)
  -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 주요 개정 내용

- ‘노동자이사’ 명칭을 ‘노동이사’로 개정(제8조, 제10조, 제14조)
  -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 7월)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개정(제14조)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21. 1월)
-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제25조)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16. 9월)
-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규정의 범위를 ‘제 규정’으로 구체화(제27조, 제35조, 〈별표 1〉, 〈별표 2〉)
  -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현황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 제출(공기업담당관, ’21. 5월)
- 결산감사 완료 기한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개정(제40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9. 12월)

## □ 조항별 변경 내용

### ○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현 행 :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노동자이사를 포함한다)
- 변경(안):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노동자이사를 포함한다)

### ○ 제10조(임원의 임기 및 해임) ③항

- 현 행 : 노동자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노동자이사 선출절차를 재이행하여야 연임이 가능하다
- 변경(안): 노동자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노동자이사 선출절차를 재이행하여야 연임이 가능하다

### ○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항

- 현 행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노동자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변경(안)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공무원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노동자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25조(조직 및 정원) ①항

- 현 행 :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함
- 변경(안): 재단의 조직은 별표 1,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 제27조(의결사항)

- 현 행 : 6.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변경(안): 6.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제35조(재산) ②항

- 현 행 :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그 내역은 <별표 1>과 같다
- 변경(안):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그 내역은 <별표 3>과 같다

○ 제40조(결산) ①항

- 현 행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감사 완료
- 변경(안):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감사 완료

○ <별표 1> 기본재산 목록

- 현 행 : <별표 1> 기본재산 목록
- 변경(안): <별표 3> 기본재산 목록

○ <별표 1> 기구표

- 내 용 : 재단의 조직을 기구표로 신설하여 정관에 반영

○ <별표 2> 정원표

- 내 용 : 재단의 정원을 정원표로 신설하여 정관에 반영

□ 참고 사항(제안 근거)

○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7월)

- ‘노동자이사’ 명칭을 ‘노동이사’로 개정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21. 1월)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9조(임원) ④항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지방공무원법」(’21. 1월)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16. 9월)

### (4. 조직과 정원 운영)

#### 가.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원칙

- 출자·출연 기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조직과 정원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하거나 정원의 운영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함

4. 조직과 정원에 관한 내부규정에는 조직별·직급별 정원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함

## ○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현황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 제출(’21. 5월)

-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규정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명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9. 12월)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직제규정 개정('21. 10월)

1. <별표 1>

재단의 정원

○ 경영본부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행정 지원직
37	1	4	7	5	5	6	5	4

※ 행정지원직은 기사, 비서, 환경미화원 등으로 한다.

○ 음악감독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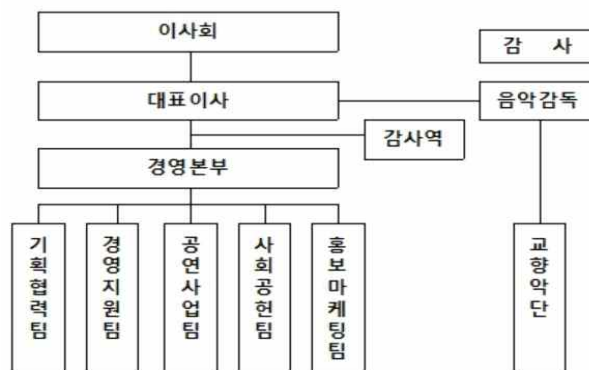
○ 교향악단

합 계	수석 부지 휘자	부지 휘자	악장	부악장	제1수석	제2수석	부수석	차석	일반단 원	악가· 악보 위원
123	1	1	2	1	14	4	14	6	76	4

※ 공연기획자문역 1, 상임작곡가 1

2. <별표 2>

기구표



## □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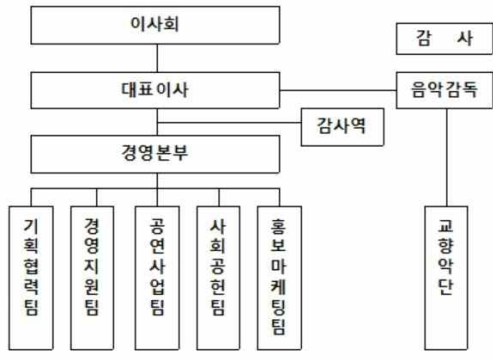
- 2021. 12월 중 :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서면)
- 2022. 1. 24. : 이사회 '정관 개정(안)' 의결
- 2022. 1. 28. : 서울시 승인 통보 후 소관 구청에 신고



##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b>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사장 1인</li> <li>2. 대표이사 1인</li> <li>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노동자 이사를 포함한다)</li> <li>4. 감사 1인</li> </ol>	<p><b>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b>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사장 1인</li> <li>2. 대표이사 1인</li> <li>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노동자 이사를 포함한다)</li> <li>4. 감사 1인</li> </ol>
<p><b>제10조(임원의 임기 및 해임)</b>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p> <p>②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p> <p>③노동자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노동자이사 선출절차를 재이행하여야 연임이 가능하다</p> <p>④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p> <p>⑤대표이사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성과계약이나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이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p> <p>⑥그 밖에 임원의 임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p>	<p><b>제10조(임원의 임기 및 해임)</b>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p> <p>②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p> <p>③노동자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노동자이사 선출절차를 재이행하여야 연임이 가능하다</p> <p>④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p> <p>⑤대표이사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성과계약이나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이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p> <p>⑥그 밖에 임원의 임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p>
<p><b>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b>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li> <li>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li> <li>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li> <li>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6. 노동자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li> </ol>	<p><b>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b>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미성년자</u></li> <li>2. <u>「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li> <li>3. <del>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del></li> <li>4. <del>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del></li> <li>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4. <u>「지방공무원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li> <li>5. 노동자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li> </ol>

현 행	개 정 안
<p><b>제25조(조직 및 정원)</b>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p>	<p><b>제25조(조직 및 정원)</b> 재단의 <u>조직은 별표 1,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u>,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p>
<p><b>제27조(의결사항)</b>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li> <li>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li> <li>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li> <li>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li> <li>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li> <li>6.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li> <li>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li> <li>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li> <li>9.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li> <li>10. 그 밖에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li> </ol>	<p><b>제27조(의결사항)</b>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li> <li>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li> <li>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li> <li>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li> <li>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li> <li>6. <u>제</u>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li> <li>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li> <li>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li> <li>9.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li> <li>10. 그 밖에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li> </ol>
<p><b>제35조(재산)</b>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p> <p>②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그 내역은 &lt;별표1&gt;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li> <li>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li> <li>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li> </ol> <p>③ &lt;생략&gt;</p>	<p><b>제35조(재산)</b>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p> <p>②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그 내역은 &lt;별표 3&gt;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li> <li>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li> <li>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li> </ol> <p>③ &lt;생략&gt;</p>
<p><b>제40조(결산)</b>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완료하여야 한다.</p> <p>② ~ ③ &lt;생략&gt;</p>	<p><b>제40조(결산)</b>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u>2</u>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완료하여야 한다.</p> <p>② ~ ③ &lt;생략&gt;</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u>기구표</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u>정원표</u></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명)</p> <table border="1" data-bbox="798 1030 1420 1153"> <thead> <tr> <th>계</th> <th>대표이사</th> <th>음악감독</th> <th>경영본부</th> <th>교향악단</th> </tr> </thead> <tbody> <tr> <td>164</td> <td>1</td> <td>1</td> <td>37</td> <td>125</td> </tr> </tbody> </table>	계	대표이사	음악감독	경영본부	교향악단	164	1	1	37	125														
계	대표이사	음악감독	경영본부	교향악단																					
164	1	1	37	125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기본재산 목록</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data-bbox="151 1646 758 1859"> <thead> <tr> <th>구분</th> <th>출연자</th> <th>금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1,000,000</td> <td></td> </tr> <tr> <td>현금</td> <td>서울특별시</td> <td>1,000,000</td> <td>설립출연</td> </tr> </tbody> </table>	구분	출연자	금액	비고	계		1,000,000		현금	서울특별시	1,000,000	설립출연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기본재산 목록</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data-bbox="790 1646 1404 1859"> <thead> <tr> <th>구분</th> <th>출연자</th> <th>금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1,000,000</td> <td></td> </tr> <tr> <td>현금</td> <td>서울특별시</td> <td>1,000,000</td> <td>설립출연</td> </tr> </tbody> </table>	구분	출연자	금액	비고	계		1,000,000		현금	서울특별시	1,000,000	설립출연
구분	출연자	금액	비고																						
계		1,000,000																							
현금	서울특별시	1,000,000	설립출연																						
구분	출연자	금액	비고																						
계		1,000,000																							
현금	서울특별시	1,000,000	설립출연																						

# 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정관

제정 2005. 06. 01  
개정 2008. 12. 24  
개정 2009. 12. 21  
개정 2010. 12. 30  
개정 2011. 12. 28  
개정 2012. 12. 18  
개정 2015. 09. 09  
개정 2017. 01. 26  
개정 2020. 01. 08  
개정 2020. 05. 13  
개정 2021. 01. 15  
개정 2022. 02. 00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근거 및 목적)** ①재단은 민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근거로 한다.

②재단은 교향악단 활동을 통하여 서울특별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향수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도시로서 서울의 음악적인 수준과 역량을 국내외에 널리 알림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2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음악 연주활동
2. 음악·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
3. 연주자 육성사업
4. 공연예술시설의 관리·운영
5. 국내·외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협력
6.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대행사업)** ①재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 또는 재단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 제2장 임원 및 직원, 단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노동자이사를 포함한다)(개정 2020.01.08., [개정 2022.02.00](#))
4. 감사 1인

**제9조(임원의 임명)** ①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개정 2015. 9. 9)
2.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③그 밖에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및 해임)**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②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노동자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노동자이사 선출절차를 재이행하여야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20.01.08., [개정 2022.02.00](#))

④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⑤대표이사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성과계약이나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이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임원의 임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한다.

②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문화예술계 인사
2. 경영전문인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③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①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의 당연직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부치는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④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개정 2022.02.00)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02.00)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2.02.00)

4. 「지방공무원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2.02.00)

5. 노동자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0.01.08., 개정 2022.02.00)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5조(음악감독의 임명)** 음악감독은 음악감독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제청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제16조(음악감독의 직무)** ①음악감독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연 지휘 및 공연 기획 총괄

2. 단원채용 및 평가 심사

3. 기타 교향악단의 예술적 발전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직무

②음악감독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음악감독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음악감독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음악감독추천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직원·단원의 임면)** ①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재단의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음악감독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③직원과 단원의 임면,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복무)** 임·직원 및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겸직제한)** 재단의 대표이사와 직원·단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대표이사는 시장의, 직원과 단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1조(보수)** ①재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단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②비상임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과 단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24조(대리인의 선임)**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25조(조직 및 정원)** 재단의 조직은 별표 1,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2.02.00)

### 제4장 이사회

**제26조(설치 및 구성)** ①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채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2.02.00)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 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

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표이사,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9조(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치는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서면결의를 결정하기 전에 시 주관부서와의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②서면결의 의결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2조(의사록)** 이사장은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장 위원회

**제33조(설치)**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34조(운영)**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재산)**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그 내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5. 13. 개정 2022.02.00)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③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 수입금, 법인사업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제36조(재산의 관리)** ①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기금)** ①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
2. 중앙정부의 지원금
3.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재단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⑤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38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0조(결산)**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00)

②재단은 결산완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신설 2021. 1. 15)

**제41조(손익금의 처리)** ①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②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③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 제7장 보 칙

**제42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3조(해산)** 법인을 해산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개정 2021. 1. 15)

**제45조(시행규정)** ①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폐지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12.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 9. 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 1.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또는 직제 개정·폐지 등에 따른 적용)** 제9조제2항의 당연직 이사가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정·폐지 등으로 변경된 경우, 관련 조항에서 그 직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부 칙(2020. 01. 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 05. 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 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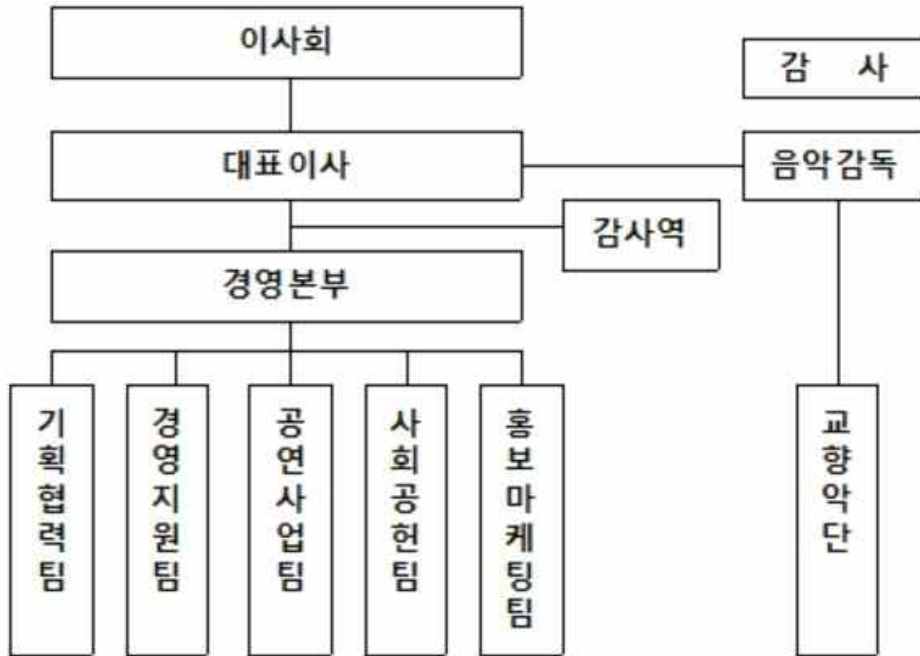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 02. 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신설 2022.02.00.)

## 기구표



<별표 2>(신설 2022.02.00.)

## 정 원 표

(단위 : 명)

계	대표이사	음악감독	경영본부	교향악단
164	1	1	37	125

〈별표 3〉(신설 2020.05.13., [개정 2022.02.00.](#))

## 기본재산 목록

(단위 : 원)

구분	출연자	금액	비고
계		1,000,000	
현금	서울특별시	1,000,000	설립출연